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2024. 2.

목 차

I. 지원사업 공모	1
1. 사업개요	2
2. 지원기준	3
3. 사업신청 및 절차	7
4. 보조금 교부 관련사항	14
5. 사업지원 및 관리 등	17
II. 서식 및 참고	19
[서식1]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20
[서식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23
[서식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	25
[서식4] 사업실적보고 및 제출서류	29
[참고1] 지원 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	35
[참고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세부절차	36
[참고3] 그린리모델링 표준도서	37
[참고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정산 방법 및 세부절차	38
[참고5] 시그니처 사업 사례	42
[참고6] 그린리모델링 종합시공사례(철마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44
[참고7]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사례(부천 철산어린이집)	48
III. Q&A	49

I. 지원사업 공모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23. 4.)하고,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속적 추진*

* (’22년 누적) 약 7.3만건 → (’30년 목표) 약 160만건

- (사업목적)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 유도

□ 지원사업 주요내용

- (사업명)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
- (사업시행)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위탁시행
- (사업규모) 총 1,275억 (국고보조사업비 예산기준)
- (대상모집)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별도 모집공고
- (주요내용)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을 대상으로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 실시 후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자격 및 대상 세부기준 가이드라인 본문 P.3~7 참조

-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26. 12. 31.)까지 이월*가능

* 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월 또는 재이월 시 중앙관서(국토교통부)의 장의 인정·승인 필요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제2항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원기준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하 “사업대상기관”)
- *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제외

제2조(정의) 5.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 각호에 따른 대상은 제외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4항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2. 동법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공건축물” 중 최초 사용승인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아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사용승인일 2014년 1월 1일 이전)

- 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
- ②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이하 “보건소”)
- ③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이하 “의료시설”)
- ④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 지원항목 및 한도

- (지원항목) 에너지공사와 추가지원 공사로 구분하며, ①에너지공사는 필수공사 및 선택공사, ②추가지원 공사는 부대공사 및 기타로 구성

구 분		기술요소
에너지공사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기계, 전기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추가지원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부대공사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확보 검토 등),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항비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지원가능(ex.친환경 건축 공법 및 자재, 국산 목재 사용,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등)

*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의 세부 적용 기준은 가이드라인 P.35 [참고1] 참조

- 에너지공사 중 필수항목이 최소 2개 이상 적용(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 포함)하여 사업 신청 및 지원
- 총 사업비 대비 필수공사비의 비율은 최소 40%이상, 추가지원비의 비율은 최대 30%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단, 해당요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고효율 조명(LED)의 경우, 조명밀도(W/㎡)가 14미만이 되도록 설계 권장
- GR 관련 설비·전기·소방 부대공사의 경우, 본 사업으로 수반되는 부대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사업과 무관한 신설 공사(배관 등)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공사 前 종합사업지원 내역에 “석면조사 필요”가 표기된 경우 석면조사 필수 신청
-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 증·개축, 대수선 등 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의 경우, 지원 항목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사업 선정 이후 적용 기술요소 임의변경, 중대한 변경사항 사전 협의 미실시 등은 「보조금법」에 따라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등의 후속 조치 실시
-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 소규모건축물(연면적 300㎡미만)의 경우 순공사비 이외 제경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상향적용
 - 섬 지역*의 경우 노임,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20% 추가 할증 적용
 - * 「섬 발전촉진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사업대상 당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보조율) 사업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기본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은 지원한도 내 해당 사업비의 50%
 - 그 외 지방자치단체 지원한도 내 해당 사업비의 70%

- (시그니처) 그린리모델링 지역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광역시·도에서 희망건축물 조사 시 신청
- 연면적·사용인원·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혜택을 다수가 누릴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의 다양한 친환경·선도적 설계 및 공법*적용으로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하며, 탄소 중립을 목표로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 창의적인 에너지절감 설계요소,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설비, 신기술 적용 등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에너지절감 기술요소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최소 1개소 이상 적용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일반사업	일반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서울, 중앙·공공	190만원 / 3.3㎡ (228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66만원 / 3.3㎡ (319.2만원 / 3.3㎡)	70 %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300㎡미만)	서울, 중앙·공공	200만원 / 3.3㎡ (240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80만원 / 3.3㎡ (336만원 / 3.3㎡)	70 %
시그니처사업	일반건축물	서울, 중앙·공공	380만원 / 3.3㎡ (456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532만원 / 3.3㎡ (638.4만원 / 3.3㎡)	70 %

※ 단, 시그니처 사업에 한해 지원한도 초과하여 공사비를 사용하여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유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군집건축물) 동일 필지 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군집된 경우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 신청가능
 - * 해당 필지 내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용도
- (복합건축물) 여러 용도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건축물의 경우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신청
 - 다만, 건축물대장상 표제부의 주 용도가 사업지원대상인 경우 또는 사업지원대상의 바닥면적합계가 연면적의 과반인 경우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가능

- (임차건축물) 임차기간이 5년 이상(2029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잔여 시 지원대상 용도의 임차면적에 한하여만 신청가능(타용도 지원 불가)
 - * 임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서 및 공사 실시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필수 추가 제출
- (중복건축물) 이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20~'23년)의 대상건축물은 **재신청 불가**하나,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
 - 군집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에서 별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복합건축물로서 지원받지 않은 부위 중 지원대상 용도에 해당 하는 경우

3. 사업신청 및 절차

□ 신청방법

- (희망건축물) 본 사업 공모를 위한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 실시를 희망하는 건축물은 **일반사업 또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구분하여 전자공문으로 접수***(수신처 국토안전관리원)
 - * 중앙·공공기관: 직접 신청, 기초지자체: 광역시·도에서 취합·승인 후 신청
- (본 사업)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접수
 -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회원가입) 홈페이지 내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 별도가입
- (모집기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별도 모집 공고
- (신청절차)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1]을 참조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 시스템을 통한 기초지자체 사업신청 시 광역시·도의 승인이 필요하며, 시스템 세부적인 사용법 [붙임2] 참조
- ※ '24년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실시 건축물에 한하여 본 사업공모 참여 가능

□ 사업 신청 주요 절차

단계	주관 기관	주요 내용	일 정
희망 건축물 접수	사업 대상 기관	· 본사업 공모 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검토 등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공사 전 종합 사업지원 대상 모집 · (중앙·공공)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전자문서 신청 · (기초지자체)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기초지자체의 신청 취합 후 광역시·도에서 신청승인	'23.12.8(금) ~ 12.27(수)
사업 공고	GR 창조센터	· '24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24. 2월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GR 창조센터	·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 대상 공사 전 종합 사업지원 (현장조사 및 에너지절감효과 분석 등)	'24. 3 ~5월
본사업 공모	GR 창조센터, 종합사업지원 기관	· '24년도 그린리모델링 본사업 공모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 · 종합사업지원 컨설팅 보고서 시스템 입력 (공사개요, 공사요소, 공사비 등)	'24. 5월
사업 신청	사업 대상 기관	· 컨설팅 보고서를 활용하여, 공사항목 및 사업비, 지방비 매칭 등 검토 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 등 관련양식 작성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신청절차는 희망건축물 접수와 동일)	'24. 5 ~6월
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 GR 창조센터	· 가이드라인 배점표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예비순위* 선정 * 사업취소 등 발생 시 선정된 예비순위에 따라 대상 추가 선정 · 대상선정 결과 사업대상기관 알림	'24. 6월
보조금 신청	사업 대상 기관	· 대상확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 : https://www.gosims.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24. 6월
보조금 교부	GR 창조센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확인 후 보조금 교부*(1,2차 분할) * 교부절차 : 국토교통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대상기관 또는 (광역시·도→기초지자체) **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추가 교부금 지급	'24. 6월

*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대상선정 기준

- (선정기준)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검토 후 선정
- (유사·중복검증)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에 따라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를 기준으로 검토를 수행
- (공사예정여부) 사용자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외 사업(내진보강, 기능보강, 유지보수 등) 예정 시
* 종합적 시공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사례 P.44 [참고6] 참조
- (우선순위선정) 에너지절감 요소와 건축물 노후도, 사업성 및 적정성 등을 배점기준표에 따라 계량화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아래의 순서 기준으로 우선 선정

- ① 지원대상용도(경로당→보건소→어린이집→의료시설)에 따라 우선
- ② 공사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의 절감량이 많은 경우 우선
- ③ 공사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이 높은 경우 우선
- ④ 사업대상기관에서 소유하는 건축물 우선
- ⑤ 에너지 절감요소 합산 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
- ⑥ 사업관리 감점이 없는 경우 우선
-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범위결정) 우선순위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해당 국고보조금을 매칭하여 24년도 예산한도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
- (대상선정절차) 사업접수(대상기관) → 우선순위산정·보고(배점기준표, GR센터) → 시그니처 사업, 지방비 부담능력 등 고려 선정(국토부, 심의위원회)
- (배점기준표) 그린리모델링 요소 적용 계획 및 건축물의 노후도·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요소 80점, 사업여건 20점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가점 13점 및 감점 10점 부여
 - 가점을 받은 경우, 사업 추진시 해당 항목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기관에서는 충분한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을 신청요망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 선정 배점 기준》

구 분		총점	배점기준(적용비율)					
에너지 절감 요소 (그린리모 델링 요소 적용 계획)	단열 ¹⁾	15점	벽 (8점)	8	6	4	2	1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3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지붕 (5점)	5	4	3	2	1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20%미만		
	바닥 (2점)	2	1					
		50%이상~ 100%이하	항목적용~5 0%미만					
	창호	18점	창 ²⁻¹⁾ (10점)	10	8	6	4	2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20%미만
			문 ²⁻¹⁾ (3점)	3	2	1		
				60%이상~ 100%이하	30%이상~ 6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일사조절장치 ²⁻²⁾ (3점)	3	2	1		
				60%이상~ 100%이하	30%이상~ 6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창면적비 ²⁻³⁾ (2점)	2	1					
		10%이상	항목적용~ 10%미만					
	설비 ³⁾	10점	냉방 (4점)	4	3	2	1	
				85%이상~ 100%이하	60%이상~ 85%미만	45%이상~ 60%미만	항목적용~ 45%미만	
			난방 (4점)	4	3	2	1	
85%이상~ 100%이하				60%이상~ 85%미만	45%이상~ 60%미만	항목적용~ 45%미만		
급탕 (2점)			2	1				
			50%이상~ 100%이하	항목적용~ 50%미만				
신재생 ⁴⁾	5점	태양광 등	5	4	3	2	1	
			20%이상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5%이상~ 10%미만	항목적용~ 5%미만	
환기 ⁵⁾	5점	폐열회수 환기장치 또는 공조기	5	4	3	2	1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20%미만	
전기 ⁶⁾	2점	고효율 조명 LED	2	0				
			적용	미적용				
에너지 절감률 ⁷⁾	10점	요소 적용시 에너지절감률	10 30% 이상 또는 에너지 효율등급 1+ 이상	8 25%이상~ 30%미만 또는 에너지 효율등급 1 이상	6 20%이상~ 25%미만 또는 에너지 효율등급 2 이상	4 15%이상~ 20%미만 또는 에너지 효율등급 3 이상	2 15% 미만 또는 에너지 효율등급 4 이상	
선택 공사 ⁸⁾	10점	BEMS 적용 ⁸⁻¹⁾ (4점)	4	0				
			적용	미적용				
		세부항목 선택개수 ⁸⁻²⁾ (6점)	6	5	4	3	2	
5개	4개		3개	2개	1개			
인정 ⁹⁾	5점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예정 시						
소계	80점							

구 분		총점	배점기준(적용비율)		
사업여건 (노후도 및 사업 적정성)	소유 ¹⁰⁾	5점	건축물 직접 소유시(건축물대장 증빙)		
		3점	건축물 임차시(계약서 증빙)		
	노후도 ¹¹⁾	10점	1993년 이전 건축허가		
		8점	1994~2000년 건축허가		
		6점	2001~2008년 건축허가		
		4점	2009~2010년 건축허가		
		2점	2011년 이후 건축허가		
	지원 대상 ¹²⁾	5점	지원대상(경로당) 용도 신청 시		
소계		20점			
총계		100점			
가점	안전성 ¹³⁾	5점	5년 내 안전점검 결과*** (보통, 미흡) 해당 시		
	기술 선도 ¹⁴⁾	3점	3	2	1
	사업 적극성	1점 ¹⁵⁻¹⁾	제3회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에서 각 분야별 우수평가를 받은 지자체		
		2점 ¹⁵⁻²⁾	사업완료 후 관리를 위하여 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 예정 시		
		2점 ¹⁵⁻³⁾	지방비 매칭 비율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를 사업대상기관에서 확보한 경우		
	소계	13점			
감점	사업 관리 ¹⁶⁾	-5점	이전(20~23년) 사업 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해당 기초지자체 대상 중 단순취소 사업이 있을 시		
		-3점	이전(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해당 기초지자체 대상 중 임의변경 내역이 있을 시		
		-2점	이전(20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 시 해당 기초지자체 대상 중 정산지연이 있을 시		
	소계	-10점			

* 본사업 공모시 배점기준 변경 가능

《배점기준 해설》

-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거실의 외벽, 최하층 바닥, 최상층 반자 또는 지붕 각각의 면적 대비 실제 단열공사를 적용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단, 최하층 바닥의 경우, 최하층 바닥부분만 아니라, 각층 바닥에 난방공사를 시행할 경우도 포함하며, 이때, 기존 전기저항식 바닥난방을 교체하는 경우 (신설 제외)도 포함

(예시) 단열배점 산정예시

- ① 거실의 외벽면적(A) : 200 ㎡, 최상층 지붕 면적(B) : 100 ㎡, 최하층 바닥 면적(C) : 100 ㎡
 ② 실제 외벽 단열공사 면적(A') : 200 ㎡, 최상층 지붕 면적(B') : 50㎡, 최하층 바닥 면적(C') : 40㎡
 ③ 벽체단열 : $A' / A \times 100 = 200 / 200 \times 100 = 100\% \rightarrow 8점$
 지붕단열 : $B' / B \times 100 = 50 / 100 \times 100 = 50\% \rightarrow 3점$
 지붕단열 : $C' / C \times 100 = 40 / 100 \times 100 = 40\% \rightarrow 1점$
⇒ 단열 총점 : 12점

- 2-1) 창외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거실의 창 및 문 각각의 면적 합계 대비 실제 창 및 문 공사를 적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 2-2) 남측 또는 서측 방향의 창호면적 대비 외부 차양장치(내부 블라인드 제외)를 설치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 2-3) 기존 창호를 벽체로 변경하여 공사하는 경우로, 기존 창호면적 대비 줄어드는 창호면적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예시) 창호 배점 산정예시

가. 창 배점

-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전체면적 : 9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 전체면적 : 10 ㎡ →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창 총합계면적(A) 총 100 ㎡
 ② 실제 창 공사 면적(B): 직접면하는 창 50 ㎡
 ③ $B / A \times 100 = 50 / 100 \times 100 = 50\% \rightarrow 6점$

나. 문 배점

-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문 전체면적 : 17 ㎡, 외기에 간접 면하는 문 전체면적 : 3 ㎡ →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문 총합계면적(A): 총 20 ㎡
 ② 실제 문 공사 면적(B): 직접면하는 창 17 ㎡
 ③ $B / A \times 100 = 17 / 20 \times 100 = 85\% \rightarrow 3점$

다. 창면적비 배점

- ① 남측 창호의 전체면적 : 80㎡, 서측 창호의 전체면적 : 20㎡ → 남측·서측 창호의 총합계면적(A) 총 100 ㎡
 ② 남측 외부 차양장치 면적: 50㎡, 서측 외부 차양장치 면적: 0㎡ → 남측·서측 외부 차양장치 총합계면적: 총 50 ㎡ (B)
 ③ $B / A \times 100 = 50 / 100 \times 100 = 50\% \rightarrow 2점$

라. 일사조절장치 배점

- ① 기존 창호의 총합계면적 : 100㎡(A)
 ② 변경 후 창호의 총합계면적: 총 95 ㎡ → 줄어드는 창호의 총합계면적(B): 총 5 ㎡
 ③ $B / A \times 100 = 5 / 100 \times 100 = 5\% \rightarrow 1점$

⇒ 창호 총점 : 12점

- 3) 기존 설비 장비의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 설비 장비 각각의 총용량 대비 교체되는 설비 장비의 용량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다만, 추가되는 장비의 경우, 기존 설비 장비 및 교체되는 설비 장비 용량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며, 냉난방기 겸용 장비에 대하여는 각각 반영하여 산정. 또한, 지역난방의 경우, 열교환기 교체도 포함

(예시) 설비공사 배점 산정예시

- ① 에어컨 사용기한 6년: 실외기 용량 10 KW × 2대,
 → 기존 냉난방장치의 용량(A) 총 20KW
 ② 교체되는 장비 1대 (B): 10KW
 ③ $B / A \times 100 = 10 / 20 \times 100 = 50\% \rightarrow 3점$

- 4) 신규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립률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기존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

- 5)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공조기에 대한 기술요소를 신규로 적용할 경우, 해당 기술요소가 적용되어야 할 거실의 총 바닥면적 대비 실제 기술을 적용하는 실의 바닥면적 비율로 배점 산정

(예시) 환기 배점 산정예시

- ① 교사실 : 10 ㎡, 보육실 : 60 ㎡, 유취실: 30 ㎡
 → 폐열환기형 환기장치가 적용되어야 할 바닥면적 총합계면적(A) 총 100 ㎡
 ② 실제 적용 기술 면적(B): 보육실 60 ㎡
 ③ $B / A \times 100 = 60 / 100 \times 100 = 60\% \rightarrow 4점$

- 6) 고효율 조명 LED 설치 유무에 따라 배점 산정. 기존 LED를 교체하는 경우 제외하며, 전체 조명밀도는 14 w/m²미만이 되도록 설계

(예시) 고효율조명(LED) 배점 산정예시
가. 기존 형광등에서 LED 교체 시 → 2점

- 7)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선전·후(안)의 에너지요구량 또는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에 대한 비율로 배점을 산정하거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의 별표2에 해당하는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에 따라 배점 산정. 단,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으로 산정 시 개선전 등급과 동일할 경우 불인정

(예시) 에너지절감률 배점 산정예시
가. 개선전 1차에너지소요량 : 220kWh/m²*y, 개선후 1차에너지소요량: 180kWh/m²*y
→ 에너지 절감률: 18%
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 주거용 이외의 건물로 1+
⇒ 에너지절감률 점수 : 10점

- 8-1) 그린리모델링 공사지원 항목의 선택공사 중 BEMS(Light BEMS, 원격검침기 포함)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8-2) 그린리모델링 공사지원 항목의 선택공사의 적용 개수에 따라 배점 산정. BEMS(Light BEMS, 원격검침기 포함) 및 일사조절장치는 개수에서 제외

(예시) 선택공사 배점 산정예시
가. 선택공사 중 BEMS → 4점
나. 선택공사 중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선택 → 3점
⇒ 선택공사 점수 : 7점

- 9)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예정을 선택할 경우 배점 산정. 공사 후 1개월 이내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녹색건축물전환을 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승인 필요
10) 사업대상시설의 소유여부에 따라 배점 산정하며, 임차의 경우, 계약서 및 소유주의 공사 진행 동의서 필수 제출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지역, 부위별 열관류율 변경 기준
12) 지원하는 용도가 경로당의 경우 점수 부여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상의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보고서 결과(안전등급 : C,D 또는 보통,미흡)에 따라 가점 추가
14) BIPV 또는 SOLAR tree, 소형 풍력, ESS, 광덕트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인 기술을 선택하는 개수에 따라 배점 산정
15-1) 2023년 지자체 녹색건축평가(22년 기준)에서 “녹색건축확산, 에너지성능, 정책이행도” 각 분야에서 우수로 평가받은 지자체인 경우. 단, 분야별 중복인정 되지 않음(평가결과는 <https://www.greentogogether.go.kr>에서 확인 가능)
15-2) 그린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전기, 가스 등 실제 에너지 사용량 확인을 위하여 계량기 보급사업 실시할 경우, 참여예정인 건축물
15-3)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에 의한 지방비를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

(예시) 추가사업비 확보 예시(서울의 경우)
가. 그린리모델링 총 사업비 5억 →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나. 사업대상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0.5억 추가 확보 → 국비 2.5억, 지방비 3억 투입
⇒ 가점 1점 획득

- 16) '23년 심의위원회에서 단순 취소 또는 임의사업변경이 확인된 기초지자체의 경우 또는 '20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 지연 기초지자체의 경우

4. 보조금 교부 관련 사항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일반사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목적*을 확인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

*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

- (보조금 교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

①e나라도움 로그인 → ②사업수행관리 → ③신청관리 → ④교부관리 → ⑤교부신청 → ⑥사업선택 후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 ⑦보조금교부(1차 80%, 2차 20% 분할 교부) → ⑧사업비 변경(필요시) → ⑨사업비 정산 → ⑩정산잔액 반납

- (보조사업 변경) 보조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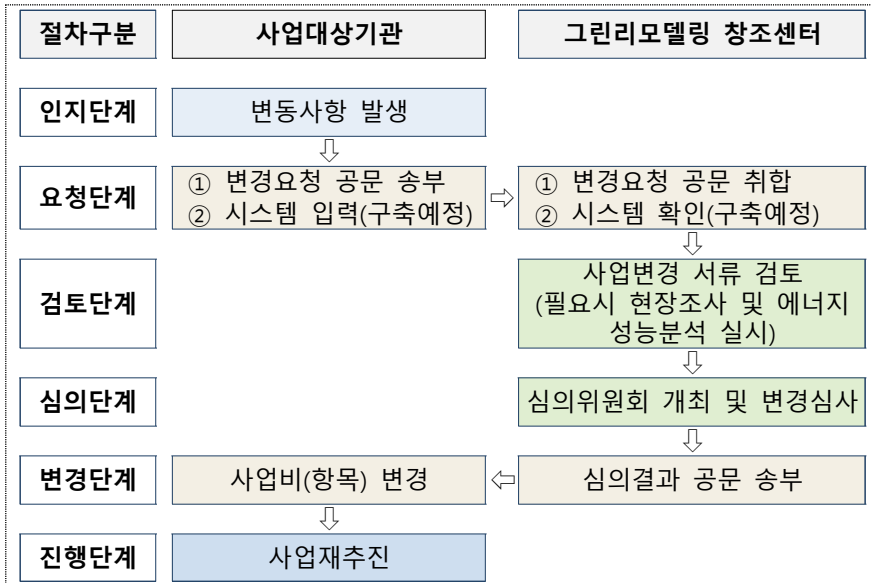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 시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변경 절차) 국고 보조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경***은 사전에 아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세부가이드 라인 별도 배포)

* 중대한 변경이란? **에너지공사 사업비의 비율이 20%이상 감소**하거나 **필수공사 적용계획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동일 필수 공사 내의 변경에서 에너지 성능 확보가 동등 이상의 경우 제외한다. [서식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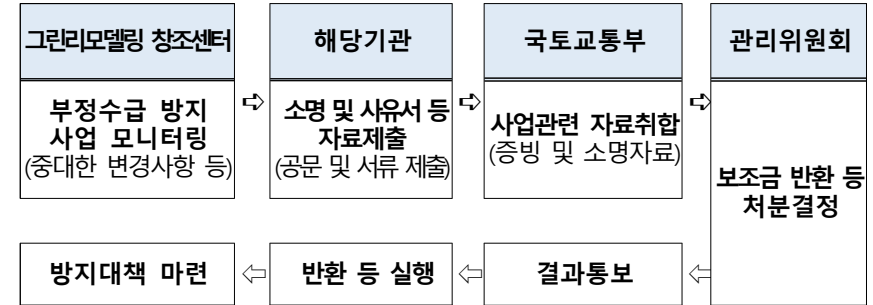


※ **중대한 변경인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부적합 판단 시 변경요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시스템 입력 기능 구축 전까지 변경요청 서식작성 후 전자공문 접수

- (사업 취소) 사업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사업 변경 시 대상사업을 취소 후 보조금 반환 등 처분 결정
-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법」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규정된 부정수급 방지 및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을 결정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절차>



* 보조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내 절차를 준용

- (보조사업 정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회계연도 후 지정기한 내 제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재원별로 작성

** [서식4] 참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참고3] 참고

- 정산잔액 등에 대하여 사업비 잔액과 사업예산에서 발생한 이자로 분리하여 지정계좌에 **반납(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6조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
- (처분의 제한)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 후 사업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용도 외 사용, 휴·폐업,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및 철거의 행위**를 5년 동안 제한
- 보조사업 후 처분제한 기간 내에 **재해·재난에 따른 건축물의 기능 상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철거 등 특이사항에 따른 처분 전 국토교통부 사전 통보 및 승인필요**
- 처분의 제한 관련 **세부기준**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며, 임의 처분으로 판단 시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등 처분을 결정

5. 사업지원 및 관리 등

□ 사업수행

- (설계 및 공사계약) 사업대상기관에서 그린리모델링 설계, 공사 수행을 위한 설계사·시공사 등을 선정하여 용역계약* 체결
 -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용역시행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 진행
-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필요건축물의 경우 GR종합사업지원 업체에서 업무 지원가능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가이드라인」 및 「그린리모델링 품질·안전 가이드라인」 참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게시)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양식을 사업별로 변경 후 활용가능
 - ※ 설계공모가 필요한 경우(설계비 1억이상) 공모대행비에 대한 국비 활용 가능
- (용역 발주·관리) 용역계약 후 착수 시 선급금(용역비의 70%이내) 지급 후 준공 시 잔액(선급금 제외) 지급 등 설계 및 공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과 목적에 따라 완공될 수 있도록 발주·관리
- (품질관리) 사업대상기관은 설계·시공 시 당초 계획한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및 관리감독 철저
 - 에너지 적용 기술 요소(단열공사, 창호공사 등)의 기밀성 확보를 위한 적정 공정 및 단가 반영
 - 설계 시 에너지공사와 관련된 기본 설계 도서 작성 권장[참고3] 참고)

□ 사업지원 및 관리

- (사업지원) 사업수행 중 기술적 지원 및 자문 필요 시 종합사업지원 수행기관을 통해 ONE-STOP 솔루션 제공
- 시그니처 사업은 해당 지역거점 플랫폼에서 전과정 사업지원
 - ※ 사업대상기관은 종합사업지원 및 지역거점 플랫폼 지원에 적극협조해야 함

- (변동관리) 사업관리 중 설계 및 공사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간접보조사업자(지자체·공공기관)는 보조사업자(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게 변동발생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할 의무*가 있음
 - * [서식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신청서”를 전자공문 제출 시 사업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중대한 변경여부 판단
- (사업비전용) '24년도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공공기관(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단위* 별로 사업비 전용**이 가능
 - * 기초 지자체 단위, 중앙행정 - 해당 행정기관, 공공기관 - 해당 공공기관
 - ** 단,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승인 절차 진행 필요
- (공정관리) 사업대상기관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요청에 따라 사업진행단계 및 담당자 등 사업현황의 주기적*인 현황화에 적극협조
 - * 매달 전자공문을 통해 월별세부추진현황 제출(추후, 시스템 구축시 시스템 활용 예정)
- (수행점검) 그린리모델링 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업신청에 대한 수행 내용 확인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사업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수행점검 실시 예정(대상지는 별도 통보)
- (사업평가) 그린리모델링 분야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전·후 에너지소요량 절감률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및 안전점검 실시 예정
 - (종합사업지원 수행기관) 일반사업(연면적 100㎡이상의 경우)에 대한 에너지 사후 평가 및 '24년 대상선정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
 - (지역거점플랫폼) 시그니처 사업 및 일반사업(연면적 100㎡미만의 경우)에 대한 에너지 사후 평가 수행
- (사업결과) 보조금 정산 시 사업 실적보고서, 설계도서, 지원항목의 세부내용*에 대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 *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의 세부내용 기준 [참고1] 참조
- (사후관리) 공사전·후 전기, 가스, 난방 등 실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 가능

II. 서식 및 참고

서식1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홈페이지 접수\]](#)

【서식1-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건축물명				한전고객번호	(에너지정보수집용)			
주 소				PK번호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유형구분	어린이집 ☐ 보건소 ☐ 의료기관 ☐ 경로당 ☐							
소유현황	소유 ☐ 임대 ☐ (임대기간: 00.00.00. ~ 00.00.00.) * 계약서 및 임대인 동의서 필수 추가 제출			소유주				
신청기관명				신청기관 유형	지자체 ☐ 중앙행정 ☐ 공공기관 ☐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 화				이 메 일			
건축물 현황	건축면적(㎡)				규모(층수)		지하 층 / 지상 층	
	연면적(㎡)				사용승인연도			
	도서지역여부	대상 ☐ 비대상 ☐		중복지원 건축물여부		대상 ☐ 비대상 ☐		
	군집시설여부	대상 ☐ 비대상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주용도:)						
	복합용도여부	대상 ☐ (사업대상 용도면적(전용) 비율: %) 비대상 ☐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사용용도						
사업계획	예상사업기간		00.00.00. ~ 00.00.00.					
	예상사업비용	총액	억원	국비	억원	지방비	기본 추가	억원 억원
	예산확보금액	총액	억원 (비율) %	국비	억원 (비율) %	지방비		억원 (비율) %
	추경편성여부	편성 ☐ (추경확정예정일: '24. 00. 00.) 미편성 ☐						
	녹색건축물 전환인정계획	있음 ☐ 없음 ☐		계량기보급 사업참여계획		있음 ☐ 없음 ☐		
	안전점검 이력		있음 ☐ 없음 ☐ (최근 5년 이내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그린 리모 델링 개선 사항	필수 (2개이상)	건축 (1개이상)	단열(벽체) ☐	단열(지붕) ☐	바닥단열 및 난방 ☐		창호·문 ☐
			기계, 전기 등	냉·난방기 ☐	환기장치 ☐	신·재생에너지 ☐	Cool Roof ☐	
		선택		보일러 ☐	조 명 ☐	에너지모니터링(BEMS 등) ☐		
				조경공사 ☐	일사조절장치 ☐	스마트에어샤워 ☐	순간온수기 ☐	
			절수형 기기 ☐	환경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				
부대	구조보강 ☐ 석면조사 철거 ☐ 기타사항 ☐ (작성)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00. 00.								
신청기관명				(직인)				
※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홈페이지 작성 후 PDF파일로 추출하여 등록 [별첨2] 참조								

사업비 산출내역						
구분		기술요소		해당물량	산출금액(원)	비고
필수 공사	건축	벽체	외단열	m²		벽체면적
			내단열	m²		
		지붕	외단열	m²		지붕면적
			내단열	m²		
		바닥		m²		난방면적
		창호		m²		창호 면적
		문		식		문 면적
		Cool Roof(쿨루프)		m²		지붕층 면적
	기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m²		연면적
		고효율 냉난방장치		식		기기용량
		고효율보일러(콘덴싱)		대		대수
	전기	조명(LED)		m²		연면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m²		설치 면적
		에너지 모니터링장치	BEMS	m²		BEMS원격검침기 적용면적
			원격검침기	식		
	기타	Cool Roof(쿨루프)		m²		지붕층 면적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식		선도기술 적용 금액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식		필수공사가 관련된 가설공사만 인정
소 계 (1)						
선택 공사	건축	조경공사		m²		설치 면적
		일사조절장치		m²		창호 면적
		환경선언 제품(EPD) 마감재	벽지	m²		설치 면적
			천장재	m²		설치 면적
			바닥재	m²		설치 면적
	기계	스마트에어샤워		대		설치 개소
		순간온수기		대		필요대수
		절수형 기기		대		필요대수
소 계 (2)						
부대 공사	건축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식		
		구조안전보강 등		m²		
		석면 조사 및 제거		m²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식		
	기계	기타 GR 관련 설비공사		식		
	전기	기타 GR 관련 전기공사		식		
	소방	기타 GR 관련 소방공사		식		
소 계 (3)						
①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소개						
기타 비용	이주비용	이사 및 임차비		식		
		설계비		식		
	설계 및 감리	설계공모대행		식		
		감리비		식		
	안전교육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식		
② 기타비용 소개						
③ 부가가치세(①+②)						
사업비 총계(①+②+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공모 및 관리 등록을 위함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항목 : 소속기관, 부서, 담당지역, 이름, 아이디, 이메일, 휴대폰
- 선택 항목 : 직위, 팩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완료 시까지이며, 보유기간은 사업 완료 후 5년 간 보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할 권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스템 관리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의 필수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의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다.)

동의

미동의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024년 00월 00일
성명 : (인)

국토안전관리원 귀중

【서식2-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당해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불임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불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4년 ○○월 ○○일

○○○○○○ 장 관

[건축물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

2024. 00. 00.

[신청기관명]

1. 기본현황

☐ 변경개요

구 분	내 용				
건축물명	ex) OO 어린이집				
주 소	ex) 도로명주소 기재				
연면적/규모	ex) 000㎡ / 지하0층, 지상0층	용도	ex) 의료시설/어린이집/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ex) 박OO (000-000-0000)	사용승인년도	ex) '00년	경과연수	ex) 00년 경과
사업비 변동여부	ex) O/X (증액/감액)	필수공사 변동여부	ex) O/X (추가/삭제)	에너지 관련 공사비 감소여부	ex) O/X

☐ 사업비 변동

(단위 : 천원)

변경 전(A)			변경 후(B)			변경액(B-A)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383,972	164,560	548,532	383,972	164,560	548,532	-	-	-

- (변경 전) GR사업 선정 당시 사업비 기재(GR창조센터 홈페이지 확인 가능)
- (변경 후) 사업변경 후 사업비 기재

2. 세부현황

☐ 변경내용

1. 사업변경 취지
- 사업내용의 변경 배경 ex) 신청된 필수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 활용 등
2.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설계변경 후 인허가 절차, 변경된 견적서 확정 후 공사발주 등 ex) 설계중, 설계완료, 공사중(공정률00%), 공사완료 등 ex) '00년 0월 준공 예정 등

3. 변경내용 및 사유

기술요소		변경내용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필수공사	벽체 (외·내단열)	ex) · 외단열공사 적용 (준불연단열재 50T 보강)	ex) · 내단열 변경/동일/ 미적용 · 공사면적 및 공사 비 증가/감소	ex) · 실제 현장 물량 반영 · 단가조정으로 공 사비 증액/감액
	지붕 (외·내단열)			
	바닥난방	ex) · 바닥난방배관 공 사 적용	ex) · 미적용	ex) · 공사비 부족에 따 른 공사 미적용
	창호	ex) · 24mm 로이복층 유리 적용	ex) · 동일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ex) · 미적용	ex) · 적용 (공사면적 기재)	ex) · 낙찰차액 활용하 여 추가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 진행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 (콘덴싱)			
	조명(LED)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BEMS(또는 전자 식 원격검침기)			
	Cool Roof (쿨루프)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 축 가 설 공 사 (단열 및 창호 교체 /설치 등을 위한 직 접가설비)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절장치			
	순간온수기			
	스마트에어샤워			
	절수형 기기			
	환경성선언제품 마감재(EPD제품)			
기타 부대공사				

- * 변경 전 항목 작성 시 '컨설팅 결과보고서' 참고(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누수, 균열, 배관 부식 등) 증빙사진 첨부 요망.

4. 세부변동 계획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적용변경(안)>

(단위 : 천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증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후-전)	금액 (후-전)	
필수 공사	벽체(외·내단열)	500㎡	30,000	250㎡	15,000	-250㎡	-15,000	
	지붕(외·내단열)							
	바닥							
	창호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 (콘덴싱)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BEMS(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Cool Roof(쿨루프)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 축 가 설 공 사 (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 을 위한 직접가설비)							
선택 공사	조경공사							
	일사절장치							
	순간온수기							
	스마트 에어샤워							
	절수형 기기							
에너지공사 소계								
부대 공사	기존공사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석면 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살수공사							
	GR 관련 전선공사							
부대공사 소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 관리비·이윤·이주비용·설계 및 감리비·부가가치세 등)								
총 공사비 합계								

- * 공사별 기술요소 변경 전·후 사항 입력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설명자료 첨부 요망.
* 변경 전 세부내역 작성 시 '사업신청서' 참고(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 1회 이상 사업변경 했을 경우 변경 승인 후 변경내역 참고

000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보고

□ 사업개요

건축물명		-	유형	-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유형	-
주소		-		
담당자		직접입력	소속	직접입력
연락처	사무실	직접입력	이메일	직접입력
	휴대폰	직접입력		
그린리모델링 공사범위		필수공사	-	
		추가공사	-	
건축면적(㎡)		-	연면적(㎡)	-
준공년도		-	규모(층수)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상용도	-	
		실제사용용도	-	
사업기간		설계기간	직접입력	
		공사기간	직접입력	
		총 사업기간	직접입력	
에너지 절감률 (설계용역 최종보고서 또는 지역거점플랫폼 결과보고서 참고)			00	%

* 초록색 음영 부분은 담당자가 실적보고서 작성 시 직접 입력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물명을 검색하여 사업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사업비 정산

구분	신청금액	최종금액	사업비 증감
국비(원)	00,000,000	00,000,000	=최종금액-신청금액 (자동계산)
	(00%)	(00%)	
지방비(원)	00,000,000	00,000,000	=최종금액-신청금액 (자동계산)
	(00%)	(00%)	
총사업비(원)	00,000,000	00,000,000	=최종금액-신청금액 (자동계산)
	(100%)	(100%)	

* 초록색 음영부분(신청금액, 최종금액)은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고, 사업비 증감금액 및 사업비 비율은 자동계산이 되도록 구현

□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신청금액 및 집행금액

구분		기술요소	신청금액(원)	집행금액(원)	증감금액(원)	증감사유	
그린리모델링 비용	필수공사	단열	벽체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예시) - 단열공사 면적 증가
			지붕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바닥난방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창호	단창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이중창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예시) - 자재비 증가
			페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예시) - 층고 높이가 낮아 설치불가
		고효율 냉난방장치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고효율보일러(콘덴싱)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조명(LED)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Cool Roof(쿨루프)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선도기술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건축가설공사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선택공사	조경공사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일사조절장치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환경선언제품(EPD)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스마트 에어샤워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순간온수기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예시) - 낙찰차액 활용 하여 설치	
		절수형 기기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① 에너지공사 소개		= 에너지공사 합계	= 에너지공사 합계	= 집행 - 설계	
	부대공사	기존공사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석면 조사 및 제거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구조안전보강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GR 관련 수리공사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GR 관련 전기공사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② 부대공사 소개		= 부대공사 합계	= 부대공사 합계	= 집행 - 설계			
③ 그린리모델링 직접비용		= ① + ②	= ① + ②	= 집행 - 설계			
④ 기타제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시스템 연동	= 총 공사비- ③	= 집행 - 설계			
기타 비용	⑤ 이주비·임차료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예시) - 공사 관리를 위해 감리비 집행	
	⑥ 실시설계비용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⑦ 감리비용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⑧ 안전교육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⑨ 기타비용 소개		= 기타비용 합계	= 기타비용 합계	= 집행 - 설계		
사업비 총계		= [사업비정산]의 총사업비	= ④+⑤+ ⑥+⑦+⑧	= 집행 - 설계			

- * 신청금액은 건축물명을 검색하여 사업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실시설계비용, 감리비용은 직접 입력, 기타 금액은 합산하여 자동 등록)
- ** 초록색 음영 부분은 담당자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고, 소계 및 총계는 자동계산 되도록 구현

□ 사업 증빙서류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완료보고	000.pdf
증빙서류(20MB 이내)	000.pdf

- * 완료보고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식을 작성하여 PDF로 업로드
- ** 증빙서류 목록은 버튼 또는 글자를 클릭 시 팝업창으로 띄워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진대지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작성 후 PDF로 업로드(20MB 이내)

□ [참고] 증빙서류 목록

- GR 설계용역 준공 관련 증빙서류
 - (자체설계) 계약서류, 도면, 내역서, 준공검사조서, 세금계산서 등
- GR 공사 관련 증빙서류
 - (예산집행) 계약서류, 내역서, 준공검사조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사업변경) 낙찰차액 사용, 사업항목 변경 등 설계변경 방침공문
 - (인증서류) 지원항목 별 인증서, 확인서 등(기준 세부내용 참조)
- GR 공사 이외의 지원항목* 및 시설개선공사 등 예산집행 증빙서류
 - 집행관련 방침공문, 계약서류, 내역서, 검사조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 이주비, 임차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항목
- GR 공사 관련 사진대지
 - 공사 항목별 전, 후 사진 첨부
 - * 사진대지 첨부양식 활용

【서식4-1】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사업대상

지역	사업대상명	예산 (백만원)	추진현황	향후계획	비 고
지역	00 어린이집	700			
	00 보건소	2,100			
	소 계	2,800			
합 계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구분		금액
○○시	분기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보조금 현액(c=a+b)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 특기사항(부진사유 등)

○

2024.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서식4-2】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완료보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사업대상

지역	사업대상명	예산 (백만원)	추진현황	향후계획	비고
지역	00 어린이집	700			
	00 보건소	2,100			
	소 계	2,800			
합 계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구분	금액
○○시	분기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보조금 현액(c=a+b)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 잔액	
	이월액	
	불용액	
	이·불용 사유	

가. 예산집행 증빙서류

나.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4.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서식4-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가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a)	지자체부담금 (b)		자기부담금 (c)	합 계 (d=a+b+c)	보조금비율 (e=a÷d)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f)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i=f+h)	수익금		
	전기 이월액 (g)	집행액 (h)		발생액 (j)	반환액 (k)	미반환액 (l=j-k)
보조사업비 총액 @ 당기분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f) + 전기이월분 집행액 (g)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 (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 (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 (입력)

당기분 집행잔액 (m=d-f)	전기이월잔액 (n=g-h)	집행잔액 (o=m+n)	발생이자 (p)	차기 이월액 (q)
보조사업비 총액 @ - 당기분 집행액(f)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g) - 전기이월잔액 (h)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r=o+p+q-l)	보조금 반환액 ^{주4)} (s)	지자체부담금 반환액 ^{주4)} (t)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u=r-s-t)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 - 차기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k)×(e))-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①×⑥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k)×(c)÷(d))-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①×(b)÷(d)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참고1

지원 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

구분	GR 기술요소	내 용
필수 공사	고성능 창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세트 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의 ‘창 및 문’ 기준 적용
	고기밀성 단열문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것, 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의 ‘창 및 문’ 기준 적용
	내·외부 단열보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적용 (벽, 바닥, 지붕) * 외단열시 열교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고정장치 사용 * 화재 안전을 위해 준불연재료에 상응하는 재료 적용
	바닥	바닥 단열재, 바닥 마감재 하부에 매립시공된 온수 배관 공사(X-L 배관 등), 전기저항식 바닥난방(기존 전기방식에서 교체인 경우만 해당)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 이상, 난방시 15 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9% 이상, 난방시 71% 이상 제품 적용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열회수 환기장치 기준 적용, 또는 KS B 6879 참조)
	고효율 냉·난방 장치	보일러, 냉난방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
	고효율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 사용 * 모듈은 정격효율 18%이상 인증제품 * 접속함 및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는 KS인증제품 *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의 품질기준(KS C 8561 또는 8562 일부준용)에 따라 ‘발전성능’ 및 ‘내구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 제출 * 설치완료 시 설치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내용 참조
	BEMS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감침기(건물에너지사용량, 월별사용량 계측 가능 제품)
	Cool Roof (차열도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시험방법 ASTM C1549, E903, E1918)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65 이상인 도료에 한함
선택 공사	일사조절장치	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 루버, 어닝 등
	구조안전보강	내진성능확보 검토, 구조안전보강 등
	순간온수기	-
	스마트에너지워	-
추가 지원 가능 공사	기타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건축분야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석면 조사 및 제거
		기타 GR관련 부대공사
	기계분야	열원교체에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분야	전기용량증설 등 관련 비용
		이주비용(이사 및 임차비), 설계비·감리비, 설계공모 대행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위 항목에 준하는 기준 적용 권장하며, 항목 중 3년 이내 개선 이력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공사완료 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한 인증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지원대상 공사 중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참고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세부절차

사업 단계	'24년 사업절차	주관기관	주요 시점	비고
I 단계 사업 대상 선정	희망건축물 대상(GR컨설팅대상) 접수	사업대상기관→ 창조센터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신청	' 23. 12월	
	'24년 공공건축물 GR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GR 창조센터(이하 “창조센터”)	' 24. 1월	
	희망건축물 대상 공사 전 종합사업관리(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 착수	창조센터 & 컨설팅업체 &지역거점플랫폼	2월	
	사업대상기관과 사업계획 컨설팅 (지자체인 경우 광역까지 협의)	창조센터 & 컨설팅업체 &지역거점플랫폼 & 사업대상기관	2~5월	창조센터 사업관리 (현황 및 현안처리)
	'24년 GR 사업설명 (대상건축물, 절차, 일정안내)	국토부 및 창조센터, 사업대상기관	3월	
	'24년 공공건축물 GR사업 공모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 안내)	창조센터	5월	
	사업 신청서 제출	사업대상기관→창조센터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신청	6월	
II 단계 국비 신청 및 교부	사업대상 심의 및 선정·통보 (사업계획 최종확정)	창조센터 및 국토부→GR선정기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통보	6월	
	국비 교부신청	GR선정기관→센터→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신청	6월	창조센터 사업관리 (현황 및 현안처리)
III 단계 사업 수행 관리 (사업 지구별)	국비 교부	국토부→센터→GR선정기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교부	6월	
	설계 용역 발주등	GR대상기관		
	설 계	GR대상기관		
	공사 발주	GR대상기관		창조센터 사업관리 (현황 및 현안처리)
	착공 및 보고	GR대상기관→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보고	7월~	
IV 단계 사업 성과 관리	준공 및 완료 보고	GR대상기관→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보고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GR대상기관→국토부&창조센터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보고	12월~	
	성과 평가	창조센터		

참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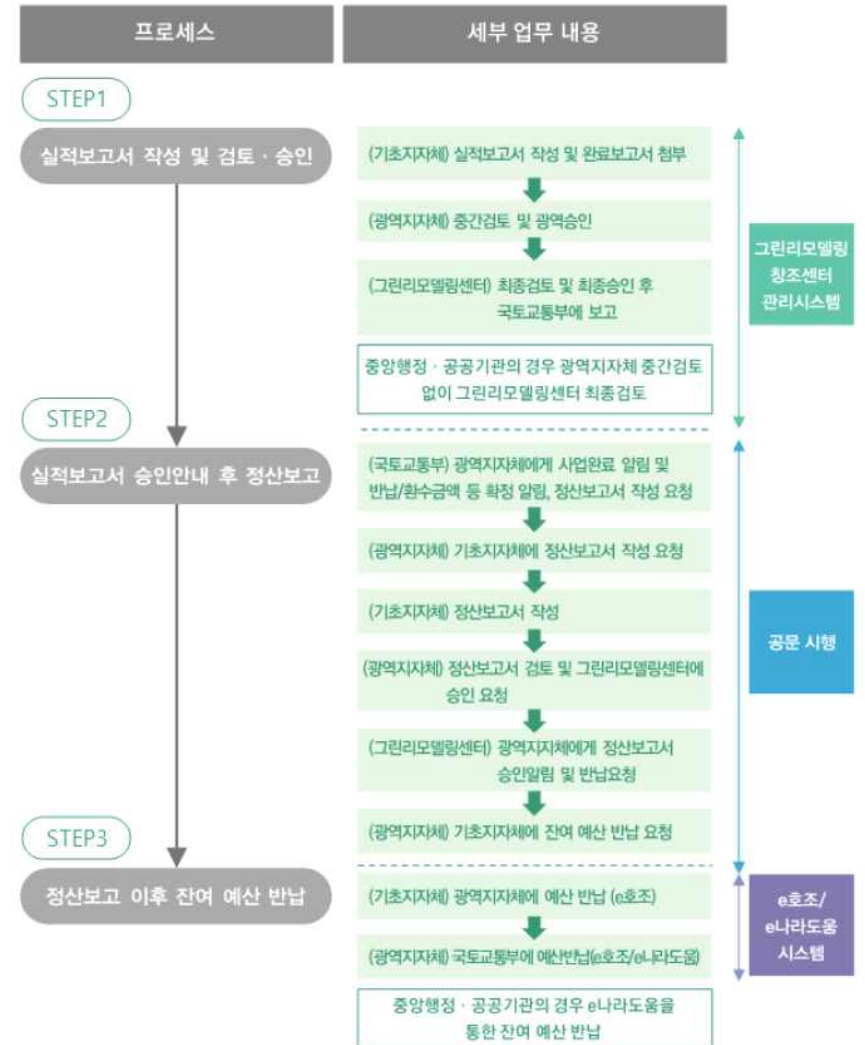
그린리모델링 표준도서

종 류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공통)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표지		
	도면목록표		
	설계 개요 및 일반사항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공사 전·후)		
건축	일반 도면	배치도	
		실내재료마감표	
		형별성능관계내역	
		철거평면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중·횡단면도)	
	상세 도면	창호 일람표	창호재질, 유리두께 등 창호 사양 구체적 표기
		창호 평면도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기계	일반 도면	각층 천정평면도 및 상세도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티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전기	일반 도면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전기설 장비설치 평면도	분전반 변경시 상세도 포함 작성
		전력 설비 평면도	
		조명 설비 평면도(공사 전·후)	각 층별 조명수량이 확인가능
		조명기구 상세도	

참고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방법 및 세부절차

| 실적보고 작성 및 정산



□ (1단계)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실적보고서

- 보조사업 사업대상기관은 사업완료시 홈페이지 내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에서 실적보고서(서식4)를 작성하고 완료보고서(서식4-2)를 첨부하여 광역지자체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승인을 받습니다.
- 주소 : <https://www.greenremodeling.or.kr/backoffice/gate.asp>

□ (2단계) 실적보고서 승인안내 후 정산보고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이월시 보조사업 사업대상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지자체인 경우 3개월)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4-1)를 이월현황을 제출합니다.
- 사업완료시 보조사업 사업대상기관은 상위보조사업기관(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집행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보고서(서식4-3)를 작성·보고합니다.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최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합니다.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 정산 완료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의 관련조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합니다.

□ (3단계) 정산보고 이후 잔여 예산 반납



잔여 예산 반납-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 반납해야하는 '집행 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자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해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합니다.
 -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 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령 제13조를 따릅니다.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1.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2.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3.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1.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2.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그린리모델링센터의 승인 필요합니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참고5

시그니처 사업 사례

□ 사업 배경

- 친환경·선도적 설계 및 공법* 적용을 통해 지역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표사례를 창출하여 대국민 인지도 및 홍보효과 제고

* 탄소흡수원 선순환 자재(국산목재, 바이오통 등), 외부차양 및 집광채광루버시스템 등

□ 추진 방법

- 건물별 최적화된 시그니처 요소를 발굴하여 사업 전(全)과정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체계적 관리지원

* 권역별 지역거점 플랫폼에서 설계검토부터 시공·공사 후 성과분석까지 지원

□ 주요 사례

-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어린이집

GR 사업연도	2022년 사업(시그니처)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3로길 38-17
연면적	378.18㎡	건축면적	105.12㎡
사용승인일	1993년(31년경과)	용도	어린이집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 3층
총사업비	780,814백만원	에너지절감률	26.0% (137.3→101.5 kWh/m²)

공사범위	건축	벽체 및 외단열 보강
	기계	EHP 교체, 전열교환기 설치
	전기신재생	고효율 LED 교체, PV 및 BIPV 설치
	기타	채광창 및 파사드 디자인 개선

개선전	개선후
-----	-----



○ 파주시 노원구 상계2동 어린이집

GR 사업연도	2022년 사업(시그니처)	주소	경기도 파주시 순못길 87
연면적	858.42㎡	건축면적	412.84㎡
사용승인일	2008년(15년경과)	용도	어린이집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 2층
총사업비	1,362백만원	에너지절감률	66.7% (221→73.6 kWh/㎡)
공사범위	건축	외단열 보강, 창호교체, 쿨루프 적용	
	기계	EHP 교체 및 추가 적용, 보일러 설치, 벽부형 전열교환기 설치	
	전기신재생	고효율 LED 교체, PV 및 BIPV 설치	
	기타	어린이집 파사드 디자인 개선, Barrier-Free 적용	



○ 광주 명성 어린이집

GR 사업연도	2022년 사업(시그니처)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42번길 40
연면적	486.14㎡	건축면적	157.36㎡
사용승인일	1998년(25년경과)	용도	어린이집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 3층
총사업비	883,892백만원	에너지절감률	71.8% (244.6→69.0kWh/㎡)
공사범위	건축	바닥 단열 보강, 창호교체, 방풍실 구성 및 단열문 교체	
	기계	EHP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 전열교환기 신설	
	전기신재생	고효율 LED 교체, 태양광 신설(솔라터치 빔 활용)	
	기타	외피 열교방지 설계, 국산목재 활용한 텃밭공간 조성 등	



참고6

그린리모델링 종합시공사례(부산 철마어린이집)

□ 부산 철마어린이집 현장 사진



□ 그린리모델링 사업진행 과정

추진내역	시작일	수행기간	완료예정일	완료일자	비고
설계	계약	'20.09.01	'20.11.10 ~ '20.12.09	-	내진설계 계약('20.12)
	착수	'20.11.10	'20.11.10 ~ '20.12.09	'20.12.09	
	준공	-	-	'20.12.09	
	납품	-	-	'20.12.09	내진설계 완료('21.01)
공사	발주	'21.02.18			공고예정일(2.26~3.05)
	계약	'21.03			발주 이후 일정 변경
	착수	'21.03			
	준공			'21.05	종합시공 60일 소요

□ 그린리모델링 공사내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공사내용)
그린리모델링	건축	외벽	-
		창호	18mm 복층창(AL)
	기계	출입문	일반문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	천장형 장비 2대 교체 추가 콘덴싱 가스보일러 2대 신설



□ 포항 시립24시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 (개요)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보조 (총사업비 4.2억 / 국비 2.9억원)를 통해 개선공사 시행

《 시립24시간어린이집 현황 및 그린리모델링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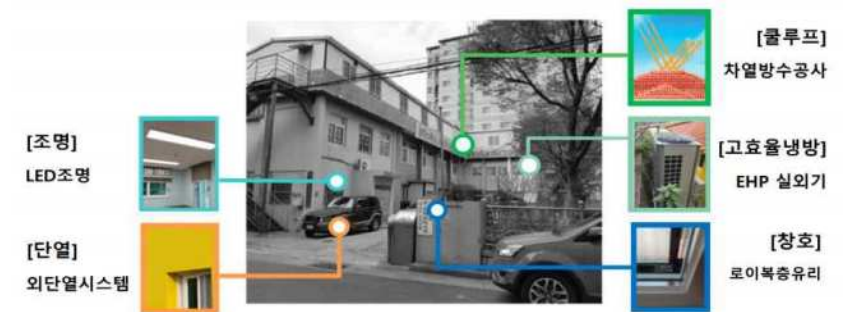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5-6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0층 지상 2층
연면적	424.00 m ²	용 도	청소년회관
건축연도	1977	사용시간	연중 가동

구 분	그린리모델링 전	그린리모델링 후
외관		
공사 내역	외벽·지붕	확인불가(사용승인 1977)
	외부창	5mm 이중창
	냉방장치	EHP
	조명	형광등
	환기·신재생	없음
공사비	4.2억	

□ 효과 분석 [시뮬레이션 툴 : EC02-00]

구 분	공사 전(A)	공사 후(B)	절감률
에너지 요구량(kWh/m ²)	113.1	91.1	19.5 %
에너지 소요량(kWh/m ²)	125.8	69.6	44.7 %
1차에너지 소요량(kWh/m ²)	188.1	124.2	34.0 %
온실가스 배출량(kgCO ₂ eq)	18,588.6	14,233.5	23.4 %
식재 효과(소나무 기준)		538 그루	
산림조성 효과(소나무 기준)		4,555 m ²	
승용차 대체 효과		1.79 대/년	

□ 그린리모델링 종합 계획



□ 세부 개선 사항

구분	적용기술 주요내용	비고
외벽 단열	• 확인불가 ⇨ 60mm PF단열재 • 열관류율(W/m ² ·K) 0.619 ⇨ 0.305 (단열성능 51% 증가)	 0.619 W/m ² K → 0.305 W/m ² K
창호	• 5mm 이중창 ⇨ 26mm 로이복층유리 • 열관류율(W/m ² ·K) 3.6 ⇨ 1.8 (단열성능 50% 증가)	 3.6 W/m ² K → 1.8 W/m ² K
냉방	• EHP ⇨ 고효율 EHP • COP(성적계수) 3.23 ⇨ 4.43 • 용량 48.40 kW ⇨ 90.50 kW	 COP 3.23 → COP 4.43

□ 노후시설 안전성 확보 및 내진 보강요소 강화

그린리모델링 내진 보강요소	
 철거 옥상난간 및 조립식 구조물 철거, 석면해체 등을 통한 노후시설 안전성 확보	 내진 보강 벽체보강, 보 보강을 통한 내진 보강요소 강화

참고7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사례(광명 철산어린이집)

□ 광명 철산어린이집

- (개요)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보조 (총 사업비 7.2억(국비 5.0억, 지방비 2.2억))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준공('20.7월)

《 철산어린이집 현황 및 그린리모델링 개요 》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위치	경기도 광명시 연서일로17번길 18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3층
연면적	577.00 m ²	용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건축연도	1991	사용시간	연중 가동

구 분	그린리모델링 전	그린리모델링 후
외관		
공사 내역	외벽·지붕	외단열
	외부창	16mm 알루미늄 복층유리
	냉방장치	PAC
	난방장치	가스보일러
	조명	형광등, LED
공사비	환기·신재생	-
		7.2억

□ 효과 분석 (시뮬레이션 틀 : EC02)

구 분	공사 전(A)	공사 후(B)	절감률
에너지 요구량(kWh/m ²)	152.8	74.1	51.5 %
에너지 소요량(kWh/m ²)	175.1	30.3	82.7 %
1차에너지 소요량(kWh/m ²)	293.7	31.7	89.2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수준	2 등급	1+++ 등급	-
온실가스 배출량(kgCO ₂ eq)	29,888.6	3,346.6	88.8 %
식재효과(소나무 기준)		3,277 그루	
산림조성효과(소나무 기준)		27,748 m ²	
승용차 대체효과		10.92 대/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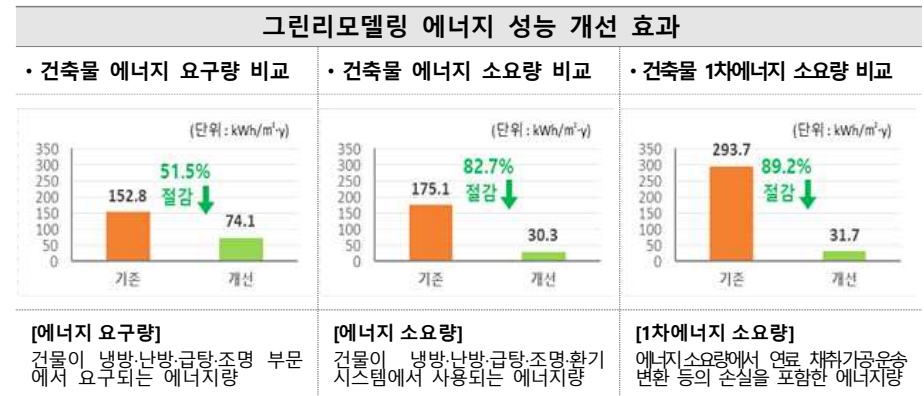
□ 그린리모델링 종합 계획



□ 세부 개선 사항

구분	적용기술 주요내용	비고
외벽 단열	50mm 단열 ⇨ 115mm 단열 - 열관류율(W/m²·K) 0.500 ⇨ 0.211 (단열성능 57.8% 증가)	
창호	16mm 알루미늄 복층창 ⇨ 28mm 로이 복층창 - 열관류율(W/m²·K) 4.000 ⇨ 0.980 (단열성능 75.5% 증가)	
냉방	- PAC ⇨ 고효율 EHP - COP(성적계수) 2.5 ⇨ 4.5 - 용량 23.2 kW ⇨ 15.0 kW	

□ 개선 효과



Q&A

Q1. 그린리모델링이란 무엇인지?

A.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친환경 리모델링을 말하며 단순 창호·설비 교체 등 개보수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포함함

Q2.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의 '준공' 기준이란?

A. 준공은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실 준공일과 사용승인 일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준공관련 서류를 증빙하면 확인 후 준공일 인정(증빙 예시: 준공검사 조서 등)

Q3. 그린리모델링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A. 공사 전 종합사업관리를 신청한 건축물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전문기관(GR종합사업지원업체)을 통해 현장 조사와 설계컨설팅을 실시하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함. 대상 선정 후 사업비 교부가 되면 지자체가 설계와 공사 발주를 추진

* 공사 전 종합사업관리비는 국비로 지원하며 '24년 희망건축물을 신청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만 본 사업공모 신청 가능함

Q4. 국가로부터 일부 운영비를 보조받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소유 및 운영·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불가함.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5.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Q5. 사업비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A.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범위는 설계비와 공사비이며, 공사비의 경우, 필수공사 + 선택공사 아이템에 대한 공사비 및 추가지원가능공사의 항목을 포함
- “서울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서울·중앙·공공”)이 소유(임차 포함)한 건축물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 지원가능
 - GR사업 건축물당 총사업비는 연면적(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비 지원 가능한 총사업비 한도는 380만원/3.3㎡이고 총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 자부담
 - 서울·중앙·공공*의 경우 건축물당 190만원/3.3㎡(380만원×50%)까지 국비 지원가능
- * 서울 : 서울특별시, 관할 구, 산하 공공기관 / 중앙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공공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단, “서울시 외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제외)
- 그 외* 266만원/3.3㎡(380만원×70%) 까지 국비 지원가능
- * 그 외 : 서울시 외 지자체, 관할 시군구, 산하 공공기관
- 단, 소규모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연면적 300㎡미만)인 경우 국비 지원 가능한 총사업비 한도는 400만원/3.3㎡ 이고, 서울·중앙·공공은 200만원/3.3㎡(400만원×50%), 그 외 280만원/3.3㎡(400만원×70%)까지 국비 지원
 -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포함)의 경우 노임,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20% 할증하여 지원
 - 대상 사업 당 국비 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기타 GR사업 관련한 용역, 공사, 이주비, 기반시설비용 등에 국비 지원 가능
 - 문주 등 건물 외 부분은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만 공사 가능하며, 공사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가능

Q6. 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2층에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A. 복합용도 건축물 면적(전용면적) 중 사업대상 용도면적(전용면적)비율이 50% 이상 시 전체건축물을 대상으로 100% 지원가능. 해당 시설의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경로당 전용면적이 건축물 50% 미만은 지원불가

Q7. 설계사 및 시공사는 누가 선정하는지?

- A. 해당 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

Q8. 민간소유의 건물을 취약계층 이용 용도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A. 임차한 건축물(준공 후 10년 경과)은 임차기간이 2029년 1월 1일 이후 까지 계약체결 된 경우 지원가능
- 단, 사업대상기관이 임차한 건축물이 복합용도인 경우, 임차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민간이 사용하는 타 용도 지원불가

Q9. 해당 공사를 올해 완공해야 하는지?

- A. 올해 공사 완료가 원칙으로 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 다만, 사업규모 및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26.12.31.까지) 이월 가능

Q10. 공사 시 어린이집 등 운영을 위한 이주비 등 설계비와 공사비 이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은?

A. GR사업 관련한 용역, 공사, 이주비, 기반시설비용 등에 국비 지원 가능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GR 용역	설계, 감리비, 폐기물처리(석면처리 및 관련감리포함), 구조안전점검(내진성능 확보 검토 등), 설계공모대행 등	
GR 공사	공사(철거포함 가능), 관급자재 조달 등	
이주비	임시공간 임차비용 ¹⁾ , 이사비용 ²⁾	차량운행비(통학, 출퇴근), 집기류 등 지원 불가
기반시설 ³⁾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 증설관련 비용 등	기반시설비용이 GR 공사비보다 큰 경우 지원 불가
안전 관련 비용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⁴⁾ , 해체계획서 작성비 ⁵⁾ 등	

- 1) 병원의 경우, 공사 진행을 위한 재실환자 이송 인건비 지원가능
- 2) 공사범위에 기존 숙소가 포함된 경우, 임시 숙소 임차료 지원 가능
- 3) GR공사와 관계없는 소방시설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공사비는 지원 불가
- 4)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 근거하여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함
- 5)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3항에 근거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 해체 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함

※ 이주비의 경우, 공사기간 이외의 집행 내역은 정산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Q11.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및 사업공모 신청서에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선정 조건은?

A. 전문기관(GR종합사업지원업체)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에 반영 가능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기술요소
에너지공사	필수공사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기계, 전기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공사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환경성선안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추가지원	부대공사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확보 검토 등),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지원가능 (ex.친환경 건축 공법 및 자재, 국산 목재 사용,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등)

- 에너지공사 중 **필수항목이 최소 2개 이상 적용**(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 포함)하여 사업 신청 및 지원
- 전문기관(GR종합사업지원업체)은 GR사업건축물별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아래의 컨설팅 우선 검토 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신청함

<GR종합사업지원 및 설계·공사 우선 검토순위>

- ① 필수공사·선택공사를 적용하여 에너지성능개선(절감률)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
- * 에너지 절감률 30% 이상을 목표로 추진, 미달성 사업지의 경우 사유서 제출 필요
- ② 추가지원 가능 공사 중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적용 검토 (GR컨설팅 내역에 “석면조사 필요”가 표시된 경우, 석면조사 필수 신청)
- ③ 추가지원 가능공사 중 나머지 항목을 적용 검토

Q12. 사업공모 신청서에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선정 이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한지?

A. 지자체에서 설계 발주 후, 현장 여건에 따라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중대한 변경*은 사업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변경 신청 시,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 제출이 필요하며, 필요시 GR종합사업지원업체 자문 가능

* 중대한 변경: **에너지공사 사업비의 비율이 20%이상 감소**하거나 **필수공사 적용 계획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동일 필수 공사 내의 변경에서 에너지 성능 확보가 동등 이상의 경우 제외한다.

** 국비 지원 금액 증액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허

*** 중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나 추가 금액을 GR 사업대상기관이 부담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을 자체처리 가능. 단, 사업준공 및 정산보고시 변경내용을 일괄로 보고

Q13. 사업공모 선정 이후 사업 취소 가능여부?

A.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취소 승인 절차를 득한 후 사업 취소가 가능하며, 단순 취소 시 차년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선정 배점기준표 “사업관리”에 단순 취소에 대한 배점 기준 참조

Q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 별로 사업비 전용이 가능한지?

A. 사업비 전용 가능. 단,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심의 절차 진행 필요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신청하고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단위* 별로 사업비 전용**이 가능함

* 기초 지자체 단위, 중앙행정 - 해당 행정기관, 공공기관 - 해당 공공기관

** 단,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절차 진행 필요

※ 예) 서울시 송파구 A 건물 사업비 100백만원(국비기준), B 건물 사업비 200백만원(국비기준)으로 총 300백만원으로 최초 사업비 결정 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을 통해 A 건물 사업비를 150백만원(국비기준), B 건물 사업비를 150백만원(국비기준)으로 변경하여(총액 변동없음) 사업 추진

Q15. 그린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외장재를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A.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단을 받아 진행 필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부 칙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수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